

# 질의·응답

문 우선 2년여에 걸친 작업을 통해 업계의견이 많이 수용된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기술수준이 상당부분 고시·공시화 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기간에 할 것인가?

답 기술발전 추세와 현실여건에 따라 융통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조속히 관련업계와 공동작업해 연말까지 만들어 나가겠다.

문 제2조(적용범위)에서 「단 국가기간전산망과 공중통신 사업자의 사업용 전산망 이외의 전산망에 대해서는 전산망 내부의 상호접속은 권고로 한다」는 내용중 「전산망내부의 상호접속」은 앞귀절과 중복이 되므로 이를 삭제하면 뜻이 충분히 전달되면서 간결해질 수 있지 않은가.

답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체들이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

문 제4조 3항의 경우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고시·공시는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므로 삭제시키는 것이 어떤가?

답 의견수렴절차의 문구를 넣은 것은 이제부터 표준화가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규제방식을 지양하고, 이해관계자의 협조를 구하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민관이 공동으로 모색하며, 표준화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 분계점은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 자기주도권을 악용, 자기전산망에 접속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과 금전적 부담을 시킬텐데 전산망의 원만한 발전을 위해 분계점 설정시 분쟁이 있을 경우 이의 해소 방법은 무엇인가. 또한 제5조 3항이 제8조와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답 외국에서는 정보수출을 우려해 전략상 망간의 접속을 꺼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리고 중복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분계점에서 사업자가 접속할 때 장관이 분계점에 대한 사항을 분명히 적어서 조정함으로써 분쟁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고 본다.

문 제6조 불요전자파의 제한목적은 전자계산 조직 이용자와 통신망에 미치는 지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통신망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형식승인검사를 통하여 통신망에 접속되는 기기의 불요전자파를 검사하고 있으며,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산망 기술 기준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전자계산조직이 이용되는 전 산업분야 대상의 포괄적인 법률에서 다룰 영역이라 생각되므로 삭제돼야 하지 않는가?

답 불요전자파가 사람에게 해를 주는 측면도 생각해 볼수 있으나 동 조항의 제한목적은 근본적으로 무선통신 및 인접 시스템에 영향을 줄 우려에 의해 제정됐다. 또한 각 사업자가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해 서비스하는 소비자 측면과 불요전자파 한계치를 만족치 못하는 기기를 사용해 인접시스템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동조항은 사업자 규제보다는 보호하는 측면에서 제정되었다 할 수 있다. 특히 전산망이 애널로그가 아닌 디지털 형식으로 운영되므로 더욱더 방해를 받을 우려가 높은 것이다. 또한 법은 제정목적에 따라 여러 대상이 있고,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법적근거가 확보되는 전산망은 이런 의미에서 보호해야 할 특수분야라 생각된다. 어쨌든 이 조항은 관련업계에서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

문 본 기준안은 표준의 적용에 대한 권고등의 조항이 있을 뿐 기능표준, 시험방법 등의 제정을 일정한 기간내에 해야 한다는 반대 의무 조항이 없으므로 이 조항이 첨가돼야 하지 않는가?

답 타당한 질문이라 생각되나 이 기준안에 구체적인 사항을 넣을 수 없다. 연차적으로 표준화 항목 계획 수립과 기능규격을 만들어 3/4분기에 이해·당사자와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표준화 항목과 우선 순위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정해 나가겠다.

문 제7조 1항에서 적합한 시험이나 상호운용성 시험에 관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답 검토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용어의 정의를 첨가하겠다.

문 수정안에서 정보의 보조조항을 삭제했는데 어떤 형태로든 사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법조항이 있어야하지 않나.

답 정보의 보호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술기준부령 수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다뤄야 한다고 본다.

문 7조 2항에서 인증과 시험은 분리돼야 하지 않나.

답 그렇다. 시험은 체신부장관이 정한 적합자가 시행하며, 인증은 그 시험에 합격된 사람에 한해 체신부장관이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재, 미국·일본에서는 협회의 민간조직이 구성돼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유럽은 구주 공동체가 주관하여 정부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인증시험의 적합한 자 선정에 대해서는 절차규정을 만들겠으며,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문 분계점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지 않나.

답 검토해 보겠다.

문 제4조 3항 「이해 당사자」 제18조 2항 「적합한 자」 선정에 대하여 의견수렴과정을 담당할 조직이 있어야 하고, 이 조직에서 표준화에 대한 절차 대상등을 규정화 시키는 것이 어떤가.

답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의 경우에는 표준화에 대한 절차규정이 되어 있다. 한국전산원에서도 국내 모든 전문가를 활용하고, 볼런티어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규합해서 표준화가 공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미·일·유럽의 경우를 조사분석, 국내실정에 맞게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

문 번호체계도 기능표준에 들어가므로 제18조를 제4조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가.

답 번호체계가 기능표준에 들어가나 여기서는 사업승인 등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다. 2항의 적합한 자 선정문제도 절차규정이 필요하므로 이 규정도 제정할 예정이다.

문 삭제된 제15조 2항에서 접속시의 손상은 전류등의 H/W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 혹은 통신 프로토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접속시의 손상은 전압 및 전류 등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문 제 18조 2항에서 체신부장관이 번호계획의 수립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적합한 자를 지정 고시한다고 했는데, 이는 망이 생길 때마다 새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소나 다른 단체로 지정고시 되는 것인가?

답 번호계획은 여러 선진국에서 많은 네트워크 출현으로 번호계획 및 사업자 ID등이 규정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적합자 지정고시는 번호가 생길 때마다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이 있고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나 전산원, 연구소 등을 장관이 지정하여 번호를 수립하고 부여하는 측면에서 번호계획 항목을 파악해야 한다.

문 인증 시험기관의 지정은 외국의 예와 같이 시스템 Level에 따라 인증 시험기관과 확인 시험기관으로 나누어서 인증시험기관은 중립적인 입장의 시험기관이 담당하고, 확인 시험기관은 시험장비와 능력을 갖춘 기관이나 업체로서 시험검사를 할 수 있고, 인증시험기관에서 정한 시험과정에 따라 시험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인증시험기관에 제출해서 확인을 받도록 시험기관을 확대할 생각은 없는가.

\* 인증시험기관(1급 시험기관)

모든 장비에 대한 시험검사가능,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 2급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인정유무 판단.

\* 확인시험기관(2급 시험기관)

Level이 낮은 장비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만 담당(시험 장비 능력을 갖춘 모든 업체)

답 진흥협회 설문조사 결과는 통신주관청과 민간이 합동으로 CTC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왔음. ♣